

# 2024 인제산골생태유학 시행 지침

‘인제산골생태유학’이란 인제군 이외의 지역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·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동안 인제군의 작은학교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I. 추진배경

- 도시화 현상 심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및 인제군 학령인구 감소 추세 지속
- 농·산촌의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속출하고, 지역 인구구조 붕괴로 마을공동체 유지의 위기 봉착
-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청정한 자연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기 위해 도시민들의 귀농·귀촌(농촌살이) 관심도 증가

## II. 사업 내용

### 1. 사업개요

1) 모집대상 : 인제군 이외의 지역 초등학교 1학년~6학년 학생

※ 농가형 / 센터형 : 초 4 ~ 6학년 학생

※ 가족형 : 초 1 ~ 6학년 학생 (부모와 함께 거주)

※ 2024년 1학기는 숙소 사정으로 가족형으로만 운영

※ 인제산골생태유학을 신청하고 사전에 전입신고한 신입생은 모집대상으로 인정

2) 운영학교 : 인제군 3개 초등학교(용대초교, 월학초교, 기린초등학교 진동분교)

3) 운영시기 : 2024년 1학기 시작 시부터 2024년 7월 31일 까지

4) 유학기간 : 6개월

5) 배정 순위

구분	농가형	가족형	센터형
1순위	학교와 농가가 원하는 학년과 성별의 학생	다자녀(초1~6학년)	학교와 농가가 원하는 학년과 성별의 학생
2순위	다자녀(초4~6학년)	학교와 농가가 원하는 학년과 성별의 학생	다자녀(초4~6학년)

※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와 학교 면담 이후 유학 대상 학생 최종 확정

※ 유학 대상 학년(초1~6학년)만 다자녀 수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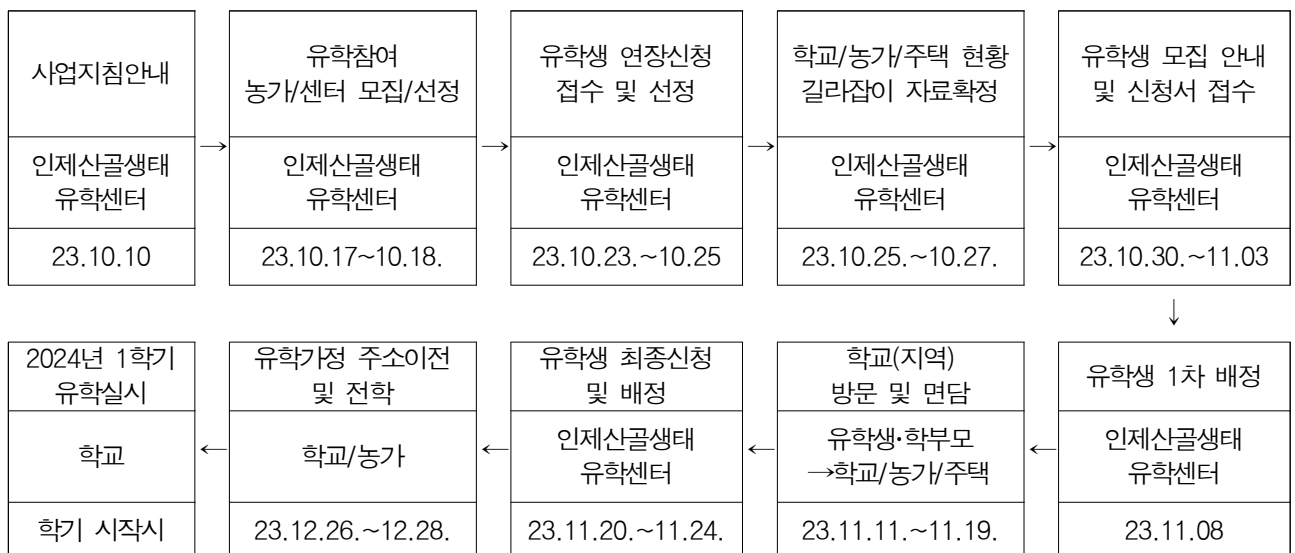
## 6) 운영 내용

구분	농가형	가족형	센터형
운영 형태	○ 학생이 학교 인근 농가에서 농가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	○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마을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	○ 학생 여러명이 법인격을 갖춘 단체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
유학 경비	○ 거주여건에 따라 상이	○ 자녀수와 거주여건에 따라 상이	○ 거주여건에 따라 상이
유의 사항	○ 한 달에 한번 이상 도시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을 권장	○ 입주시 필요용품(드라이기, 식기류, 침구류, 세면도구, 생활용품 등)은 개인 구비 ○ 공과금 및 각종 사용료(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, 인터넷 요금, 유선방송, 난방비 등)은 사용자 부담	○ 한 달에 한번 이상 도시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을 권장

## 7) 지원 내용

구분	지원 내용
농가형 / 센터형	미정
가족형	가구당 생활비 월 60만원 ※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(1명 60만원, 2명 70만원, 3명 80만원)

## 2. 사업 추진 절차



### 3. 기관별 역할

#### 1)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

- 사업 총괄 지원
- 생태유학 운영학교 및 농가 현황 파악·관리
- 생태체험교육센터(마을)의 주말·방학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
- 유학생 모집과 선정, 홍보 및 사업평가

#### 2) 지자체

- 정주 여건 개선
- 마을공동체 연계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
-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사업 예산지원(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 위탁)
- 일자리 제공 등으로 귀농·귀촌 유도
- 안전망 구축·운영

#### 3) 학교

- 유학생 면담 및 선정
- 마을-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
- 안전망 및 연락체계 구축·운영
- 지자체-마을-학교 협력 체제 구축

#### 4) 인제교육지원청

- 초등학교(분교) 행정·재정적 지원
- 유학센터-학교 협력 체제 구축

#### 5) 생태체험교육센터(마을)

- 산골생태유학 프로그램 운영
- 유학생 생활 돌봄 및 농촌살이 지원
- 유학생/농가/주택/센터 관리
- 안전망 및 연락체계 구축·운영
- 학생-도시 학부모와 소통

### Ⅲ. 시행지침

#### 1. 유학 희망 학생(학부모)

##### 【신청 기준-학생】

- 동물, 음식, 미세먼지 등의 알레르기과 기저질환이 없는 학생
- 개인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한 학생
- 인제 이외의 지역 원적교에 1년이상 재학중인 학생
- 유학 참여는 전학으로 진행되므로 유학생 전입신고 필수
- ※ 인제산골생태유학을 신청하고 사전에 전입신고한 신입생은 모집대상으로 인정

##### 【신청 기준-학부모】

- 학교와 농가부모를 신뢰하여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농가부모의 돌봄 철학을 인정 할 수 있는 학부모
- 인제산골생태유학의 철학에 인식을 같이하는 학부모
  - 인제의 청정 자연속에서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감수성 증진
  - 학생들간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성·의사소통 강화
  - 마을과 연계한 활동 및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강화
  - 소인수 학급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만의 빛깔 창출
- 유학생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가 가능한 보호자

##### 【신청 방법】

- 인제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(인제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.kr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 담당자 (1215khj@naver.com) 에게 이메일로 제출 [☎ 033-463-8681]

##### 【유의사항】

- (숙소사용료) 학부모가 매월 초 카드결제 또는 아래 계좌로 이체
  - 농가형 : 농가부모 계좌, 센터형 : 센터 법인 계좌, 가족형 : 마을회 계좌(주택소유주 계좌)
- (연장신청) 유학연장 희망시에는 연장신청서 [첨부 3]를 작성하여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에 제출
  - ※ 연장심의 후 학교에서 동의한 경우 연장 가능
- (중도포기) 중도포기를 희망할 경우, 유학생 학부모는 중도포기 신청서 [첨부 2]를 작성하여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에 제출
  - ▶ 중도포기후 인제의 다른 산골생태유학 운영 학교로 전학 불가
  - ▶ 개인적으로 전학 할 경우 인제산골생태유학사업에서 제외되며 체재비 지원 불가
  - ▶ 중도포기시 숙소사용료는 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
- (유학 중단) 유학 중 유학생이 학교폭력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유학 중단

## 2. 생태체험교육센터(마을)

### 【신청 기준】

- 마을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친 마을
- 학교 주변에 유학을 운영할 수 있는 농가/주택이 있는 마을
- 특색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마을
-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학교 후나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마을
- 유학기간 동안 학교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마을은 신청 불가

### 【신청 방법】

- 유학 운영 학교 신청서 [첨부 5] 를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에 제출
  - ※ 해당되는 농가형/가족형/센터형 참여 신청서 [첨부 5-1, 5-2, 5-3 포함 제출]
  - ※ 인제산골생태유학 가이드북 탑재용 농가와 주택 자료(사진 등) 제출(별도 안내 예정)

### 【운영 내용】

- 매월 초에 유학 체재비 지원금 지급
  - 계좌이체(농가형 : 농가부모 계좌, 센터형 : 센터 법인 계좌, 가족형 : 주택소유주 계좌)  
또는 카드 결제(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)
  - ※ 유학 체재비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치 않음
  - ※ 숙소이용료 : 체재비 지원금(자녀수에 따라 차등)을 제외한 금액은 학부모 부담
- 방과후수업 시간, 주말 산골생태유학 프로그램 운영
- 방학기간 동안 생태탐방 및 산골생태유학 프로그램 운영
- 학교 외 생활·안전 지도
- 학생의 유학 연장신청 시 평가 참여

## 3. 교육청

### 【운영 내용】

- 전학 등 학적 관리
- 학생의 유학 연장신청 시 평가
- 유학학교와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 간의 협력체계 구축

## 4. 학교

### 【운영 내용】

- 전학 등 학적 관리
- 교내 생활·안전 지도
- 학생의 유학 연장신청 시 평가
- 유학생·재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지역 주민 모니터링

## 5. 운영형태

### 【농가형】

- 유학생을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지원하고 돌봄이 가능한 농가
-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농가
- 농가부모는 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 교육,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수 필수
- 유학 운영학교 통학구역 및 택시 노선내에 위치한 농가  
(단,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)
- 숙소비용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농가
- 유학생만 주소이전하는 경우 농가 세대주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한 농가
- 유학생 입주 시 숙소 장기숙박 계약서 [첨부 7] 작성
- 시설기준 <인제산골생태유학 농가·센터운영 가이드북·아동복지법 준용>

구분	기준
숙박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학생 성별에 따라 방을 분리하여야 함</li> <li>○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㎡이상 확보하여야 함</li> <li>○ 채광과 통풍이 양호해야 하며 지하실 등에는 설치가 불가 함</li> <li>○ 창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하며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숙박실 마다 개인별 취침공간(침대 등), 개인사물보관함, 학습공간(책상)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</li> <li>○ 숙박실은 한 방에 가급적 유학생 2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함</li> <li>○ 유학생 숙박실은 농가부모 숙박실을 중심으로 상시 돌봄이 가능한 같은 공간에 위치하여야 함</li> </ul>
위생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함</li> <li>○ 목욕실에는 욕탕이나 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주기적인 청소, 환기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해야 함</li> <li>○ 세탁기와 건조공간을 갖추어야 함</li> </ul>
조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,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함</li> <li>○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전염성 질환,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사람은 유학생의 식사를 조리할 수 없음</li> <li>○ 농가부모는 지역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</li> </ul>
급수·배수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수·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 함. 다만,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, 폐기물처리시설, 동물사육장,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</li> </ul>
입지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근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텃밭, 숲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많은 곳에 위치 하여야 함</li> <li>○ 어린이의 신체적·사회적 안전에 위협하다고 판단되는 시설(폐기물처리 시설, 유흥업소, 전염병원 등)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</li> </ul>

#### 신청 방법

- 농가형 참여 신청서 [첨부 5-1] 를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에 제출

#### 안내 사항

- 농가당 유학생 3인 이하 배정

※ 형제·자매끼리 오는 경우 3인 이상 배정 가능하며, 형제·자매가 아닌 경우 동일 성별 배정

## 【가족형】

- 지자체나 마을자치회에서 제공한 주택
-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주택 (농어촌체험휴양마을, 한옥체험업, 관광펜션업, 숙박업 등록업체 등)

※ 민박업자 신고 기준(농어촌정비법 제86조)

-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
-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
- 제출 서류
  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수질검사 성적서
  - 주민등록표 초본/가족관계증명서/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매년 소방·안전교육 2시간, 서비스·위생교육 1시간 교육 이수
- 매년 1회 이상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 실시

- 생활에 필요한 필수 비품을 구비 한 주택
  - TV, 세탁기, 냉장고, 에어컨, 청소기, 전자레인지, 식탁, 옷장, 인터넷 설치 등
-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택
- 산골생태유학 운영학교 통학구역 및 택시 노선 내에 위치한 주택 (단,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)
- 숙소비용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농가
- 유학생만 전입신고하는 경우 농가 세대주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한 농가
- 유학생 입주 시 숙소 장기숙박 계약서 [첨부 7] 작성
- 시설기준 <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준용>

구분	시설기준
숙박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과 거실이 분리된 곳을 권장 함 (유학생 가족수·방 크기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)</li> <li>○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이 설치되어야 함</li> </ul>
위생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함</li> <li>○ 목욕실에는 욕탕이나 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함</li> </ul>
조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방설비(싱크대)와 취사설비(전기·가스)를 갖추어야 함</li> </ul>
급수·배수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수·배수시설은 상수도로 해야 함. 다만,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먹는물관리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, 폐기물처리시설, 동물사육장,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</li> </ul>
소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함</li> </ul>

### 신청 방법

- 가족형 참여 신청서 [첨부 5-2]를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에 제출

### 권장 사항

- 월 숙박사용료·관리비·난방비 등 유학생 가족이 부담해야 할 경비 사전 고지

## 【센터형】

- 법인격을 갖추고 유학센터를 운영 중인 단체
  - 조합·법인·회사 등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
  - 마을활동가 주축으로 마을학교를 운영 중이며 단체 재난배상책임 보험 필수 가입된 단체(법인)
  - 센터종사자는 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 교육,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수 필수
  - 단독 또는 유학운영학교·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유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(법인)
- ※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「농촌유학지원사업 시행지침」 규정을 준용
- 숙소비용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
  - 유학생만 전입신고하는 경우 센터 세대주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한 센터
  - 유학생 입주 시 숙소 장기숙박 계약서 [첨부 7] 작성
  - 시설기준: <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시설의 규정을 준용>

구분	시설 및 공간	기준
필수	유학생 숙소	▶ 아동 1인당 2.5㎡ 이상(숙박 아동 기준)
	지도교사(활동가) 숙소	▶ 아동 6인당 생활지도교사 1인 이상, 교사당 독립 공간 제공
	지도교사 사무실	▶ 교사당 3.3㎡ 이상
	공동 생활공간(실내 모임 공간)	▶ 이용 아동 1인당 1.5㎡ 이상
	식당 및 부엌	▶ 아동 취사·설거지 가능한 공간 구성
	욕실 및 화장실	▶ 성별 분리
	실외마당(야외 공간)	
	세탁실 및 건조 공간	▶ 건조기능 포함(우기 때 사용)
	구비해야 할 교육기자재	▶ 놀이 용품 포함
권장	도서실, 개인 학습 공간	
	공연공간(대강당)	▶ 공동생활공간과 겸용 가능, 공연 가능 시설 필요
	목공예실 등 취미교실	

### □ 신청 방법

- 센터형 참여 신청서 [첨부 5-3] 를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에 제출